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6호 2024. 6. 25.(화)

조 례

남해군 조례 2751호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1
남해군 조례 2752호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남해군 조례 2753호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8
남해군 조례 2754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 조례 2755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남해군 조례 2756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남해군 조례 27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17

규 칙

남해군 규칙 1235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1
남해군 규칙 1236호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3
남해군 규칙 123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26

훈 령

남해군 훈령 36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 개정훈령	29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68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31
남해군 고시 제2024-69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37
남해군 고시 제2024-7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42
남해군 고시 제2024-71호 2024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고시	4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923호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7
남해군 공고 제2024-940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53
남해군 공고 제2024-953호 공무원근로자(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55
남해군 공고 제2024-954호 공무원근로자(농기계수리)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56
남해군 공고 제2024-960호 남해대교 유지관리 용역 정성적 평가 결과 공고	57
남해군 공고 제2024-964호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업무중복도) 의견수렴 공고	62
남해군 공고 제2024-967호 남해군 제3기 공공건축가 모집 공고	63
남해군 공고 제2024-970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66
남해군 공고 제2024-991호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여유도) 의견수렴 공고	72
남해군 공고 제2024-996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농어촌도로 창선면20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73
남해군 공고 제2024-1009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751호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위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위케이션센터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남해군 위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서상: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87번길 28-12
2.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앵강: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05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공휴일
3.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이용)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할 수 있다.
1. 이용 신청일 기준 남해군 내 주소를 둔 경우
 2. 남해군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숙박을 한 경우
 -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18.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4.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이용료(제5조 관련)

명 칭	기 준	요 금	수용인원 (1일 최대)	비 고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서상	1인 1일	10,000원	10명	
남해군 위케이션센터 앵강	1인 1일	10,000원	40명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사유로 예약취소 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나. 이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다.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라.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불참	-납부한 이용료 전액 반환 -납부한 이용료의 75% 반환 -납부한 이용료의 50% 반환 -납부한 이용료 반환 불가	

남해군 조례 제2752호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서관의”를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53호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한) 군수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①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100세 이상인 지급대상자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송부한다.

남해군 조례 제2754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 을 “45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55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자동이체” 를 “자동납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을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남해군 조례 제2756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제6호 중 “50명” 을 “30명” 으로, “50퍼센트” 를 “30퍼센트” 로 한다.

-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이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회” 를 “12회”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만원” 을 “5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7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3조(「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 구역안”을 “보호구역안”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남해탈공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문화재(박물관 자료)수증심의서”를 “박물관 자료 수증 심의서”로 한다.

제6조(「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재로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7조(「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가천마을다랑이는 보존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자연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전통문화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향토문화재가”를 “향토유산이”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전통건조물보존법 또는 경상남도문화재 보호조례 의하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하 “비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을 “비지정국가유산 중”으로, “것”을 “것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최소한의 구역”을 “최소한의 구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 또는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41조의6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특례)” 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로, “따른 등록문화재” 를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으로 한다.

제48조의4의 제목 “(등록문화재의 용적률 특례)” 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 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로, “따른 등록문화재” 를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안내시설물의 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지정문화재” 를 “국가지정자연유산” 으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8호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중 “문화재청” 을 “국가유산청” 으로 하고, 같은 호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35호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 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본세” 를 “지방세(가산세포함)”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236호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
- 14.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4조에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등)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용차량의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책임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차량총괄부서는 공용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23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2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핵심전략추진단의 담당사무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문화체육과 담당사무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4의 담당사무란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 보호”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의 2호의 시설 직렬의 건축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각각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4조(「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개정)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핵심전략추진단의 청사신축의 단위사무명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관광경제국의 구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문화재의 단위사무명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비지정문화재”를 “비지정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6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훈령을 발령한다.

2024년 6월 25일

남 해 군 수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등 3개 훈령 일괄개정훈령

제1조(「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조례란 중 “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문화의 통계명란중 “지정 및 사찰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남해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화체육과의 팀명란 중 “문화재팀”을 “문화유산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 - 68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 1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10.

남 해 군 수

I.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단위 :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733,549,468,653	744,224,634,984	596,567,791,335	147,656,843,649
일반회계	637,366,200,403	645,783,635,779	518,151,608,090	127,632,027,689
특별회계	96,183,268,250	98,440,999,205	78,416,183,245	20,024,815,960
상수도특별회계	30,937,344,430	31,229,704,388	21,540,748,892	9,688,955,496
청사건립	22,421,915,260	22,418,323,089	20,598,666,253	1,819,656,836
의료급여기금	759,897,000	768,391,940	741,173,830	27,218,1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74,209,000	375,280,452	300,549,350	74,731,102
환경기초시설	41,689,902,560	43,649,299,336	35,235,044,920	8,414,254,416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733,549,468,653	746,765,941,346	744,224,634,984	201,103,467	2,340,202,895
일 반 회 계	637,366,200,403	648,224,795,541	645,783,635,779	198,650,127	2,242,509,635
특 별 회 계	96,183,268,250	98,541,145,805	98,440,999,205	2,453,340	97,693,260
상 수 도	30,937,344,430	31,283,946,808	31,229,704,388	1,435,340	52,807,080
청 사 건 립	22,421,915,260	22,418,323,089	22,418,323,089	0	0
의 료 급 여 기 금	759,897,000	768,391,940	768,391,940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74,209,000	375,280,452	375,280,452	0	0
환 경 기 초 시 설	41,689,902,560	43,695,203,516	43,649,299,336	1,018,000	44,886,180

3. 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733,549,468,653	596,567,791,335	113,130,489,383	147,656,843,649
일 반 회 계	637,366,200,403	518,151,608,090	97,343,023,406	127,632,027,689
특 별 회 계	96,183,268,250	78,416,183,245	15,787,465,977	20,024,815,960
상 수 도	30,937,344,430	21,540,748,892	8,497,237,500	9,688,955,496
청 사 건 립	22,421,915,260	20,598,666,253	1,760,212,427	1,819,656,836
의 료 급 여 기 금	759,897,000	741,173,830	0	27,218,11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374,209,000	300,549,350	63,331,000	74,731,102
환 경 기 초 시 설	41,689,902,560	35,235,044,920	5,466,685,050	8,414,254,416

4. 결산상잉여금

(단위 : 원)

회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47,656,843,649	59,199,915,886	16,990,892,047	36,939,681,450	5,238,122,761	29,288,231,505
일 반 회 계	127,632,027,689	51,196,374,239	14,146,148,167	32,000,501,000	5,183,402,685	25,105,601,598
특 별 회 계	20,024,815,960	8,003,541,647	2,844,743,880	4,939,180,450	54,720,076	4,182,629,907
상 수 도	9,688,955,496	6,004,555,160	2,492,682,340	0	0	1,191,717,996
청 사 건 립	1,819,656,836	1,760,212,427	0	0	0	59,444,409
의료급여기금	27,218,110	0	0	0	0	27,218,110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4,731,102	63,331,000	0	0	0	11,400,102
환경기초시설	8,414,254,416	175,443,060	352,061,540	4,939,180,450	54,720,076	2,892,849,290

II.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1. 예산이용 · 이체 : 없음

2. 예산전용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감 액	증 액
합 계	4건	277,257,000	58,320,000	58,320,000
일 반 회 계	3건	182,127,000	57,120,000	57,120,000
특 별 회 계	1건	95,130,000	1,200,000	1,200,000

Ⅲ.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일반회계	31건	3,711,514,000	2,949,296,940	607,176,210	155,040,850

Ⅳ. 재무제표 결산 요약

(단위 : 원)

연도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3년	2,456,117,414,406	17,606,755,489	2,438,510,658,917	474,926,460,334	527,571,149,772	(52,644,689,438)
2022년	2,379,121,586,789	16,555,329,444	2,362,566,257,345	590,572,086,673	457,442,076,256	(133,130,010,417)
증 감	76,995,827,617	1,051,426,045	75,944,401,572	(115,645,626,339)	70,129,073,516	80,485,320,979

Ⅴ. 채권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107,172,984	35,813,070	149,611,887	1,993,374,167
일반회계	1,845,449,260	32,478,140	147,043,000	1,730,884,400
기타특별회계	236,404,837	3,334,930	0	239,739,76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36,404,837	3,334,930	0	239,739,767
기금	25,318,887	0	2,568,887	22,750,000
자활기금	25,318,887	0	2,568,887	22,750,000

VI. 채무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해당 없음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VII. 성과보고서 요약

(단위 : 개)

구분	성과목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미달성 (100% 미만)
합계	20	104	232	31	131	70

VIII. 기금 결산

(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106,528,492,840	29,592,086,372	26,869,573,190	109,251,006,022
중소기업육성기금	2,031,527,877	130,601,070	38,813,750	2,123,315,197
옥외광고발전기금	68,380,990	33,322,580	20,036,890	81,666,68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640,196,200	7,164,065,245	6,996,723,680	807,537,765
자활기금	928,443,121	23,334,737	0	951,777,8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5,435,233,130	20,389,810,150	17,847,369,000	97,977,674,280
고향사랑기금	0	369,464,900	0	369,464,9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	508,250,700	0	508,250,700
양성평등기금	1,002,220,000	16,686,950	1,018,906,950	0
재난관리기금	1,147,391,015	786,371,490	452,552,660	1,481,209,845
식품진흥기금	47,621,440	99,608,400	93,559,710	53,670,130
마늘명품화기금	5,227,479,067	70,570,150	401,610,550	4,896,438,667

IX.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구분	공유재산		정수물품	
	건수(건)	금액(원)	건수(건)	금액(원)
계	83,991	1,316,320,944,981	1,154	11,857,170,420
토지	28,812 (16,375,852㎡)	277,895,527,462	-	-
건물	568 (381,166㎡)	207,992,399,377	-	-
기타	54,611	830,433,018,142	-	-

남해군 고시 제2024 - 69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4-98호(2024.3.21.) 및 남해군 고시 제2024-32호(2024.3.22.)로 결정(변경)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연속지적도와 지적도의 불일치 오류 정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정정조서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정정전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90,215.7	-	579,490,215.7	100.00	
육지부 합계	357,678,651.7	-	357,678,651.7	61.72	
도시지역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리지역	137,539,423.1	증)20,250.0	137,559,673.1	23.73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47,257,782.1	-	47,257,782.1	8.15	
계획관리지역	54,126,450.4	감)298.0	54,126,152.4	9.34	
농림지역	36,155,190.6	증)20,548.0	36,175,738.6	6.24	
자연환경보전지역	153,009,287.6	감)20,250.0	152,989,037.6	26.40	
해면	55,328,658.0	-	55,328,658.0	9.55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 기정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20-481호, 2020.10.08.)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정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90,215.7	-	579,490,215.7	100.00		
육지부 합계	357,678,651.7	-	357,678,651.7	61.72		
도시지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소계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리지역	소계	137,539,423.1	증)20,021.0	137,559,444.1	23.73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57,782.1	-	47,257,782.1	8.15	
생산관리지역		54,126,450.4	감)298.0	54,126,152.4	9.34	
계획관리지역		36,155,190.6	증)20,319.0	36,175,509.6	6.24	
농림지역		153,009,287.6	감)20,021.0	152,989,266.6	26.40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 기정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고시 제2020-481호, 2020.10.08.)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정정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61-28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 획관리 지역	298.0	100.0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 사업(“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을 변경 하고자 함
		농림지역	계 획관리 지역	20,250.0	100.0	

라.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정정**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61-28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 획관리 지역	298.0	100.0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 사업(“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을 변경 하고자 함
		농림지역	계 획관리 지역	20,021.0	100.0	

2.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정정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316	상주 3지구	자연 취락지구	상주면 상주리 산261-28번지 일원	관련법규 에 따름	20,548.0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정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316	상주 3지구	자연 취락지구	상주면 상주리 산261-28번지 일원	관련법규 에 따름	20,319.0	-	

다.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 정정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16	상주 3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20,548㎡	·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사업(“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고자 함

라.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 정정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16	상주 3지구	· 자연취락지구 신설 - 면적 : 20,319㎡	· 지역수요 맞춤형지원 공모사업(“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고자 함

남해군 고시 제 2024 - 70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4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51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1	19649	도근점	중부	253099.188	296224.193	128° 03' 8.5656"	34° 52' 9.4421"	20240509	창선면 오용리 산102-7	표철	남해군청		
2	19650	도근점	중부	253039.665	296211.211	128° 03' 8.0299"	34° 52' 7.5153"	20240509	창선면 오용리 산111-1	표철	남해군청		
3	19651	도근점	중부	253004.402	296161.022	128° 03' 6.0396"	34° 52' 6.3883"	20240509	창선면 오용리 1343-2	표철	남해군청		
4	13648	도근점	중부	246383.259	292989.929	128° 00' 58.5641"	34° 48' 32.6237"	20240509	삼동면 봉화리 543-3	표철	남해군청		
5	18319	도근점	중부	258503.798	283011.017	127° 54' 30.3253"	34° 55' 8.9949"	20240508	설천면 금음리 산115-1	표철	남해군청		
6	18320	도근점	중부	258487.409	282980.307	127° 54' 29.1097"	34° 55' 8.4721"	20240508	설천면 금음리 산116-1	표철	남해군청		
7	18321	도근점	중부	258477.107	282922.652	127° 54' 26.8349"	34° 55' 8.1548"	20240508	설천면 금음리 산117	바위각인	남해군청		
8	16587	도근점	중부	245760.531	277942.417	127° 51' 6.3955"	34° 48' 16.9620"	20240514	서면 서상리 산181	표철	남해군청		
9	16588	도근점	중부	245782.342	277979.579	127° 51' 7.8647"	34° 48' 17.6594"	20240514	서면 서상리 산181	표철	남해군청		
10	16589	도근점	중부	245752.926	277997.552	127° 51' 8.5619"	34° 48' 16.7000"	20240514	서면 대정리 산351	PVC	남해군청		
11	17508	도근점	중부	254545.208	281503.094	127° 53' 29.5368"	34° 53' 00.9929"	20240520	고현면 도마리 441-2	표철	남해군청		
12	17509	도근점	중부	254498.765	281535.708	127° 53' 30.8047"	34° 52' 59.4766"	20240520	고현면 도마리 631-1	표철	남해군청		
13	13649	도근점	중부	248029.325	295837.310	128° 02' 51.2501"	34° 49' 25.0811"	20240521	삼동면 동천리 365-1	표철	남해군청		
14	13650	도근점	중부	248039.101	295890.384	128° 02' 53.3423"	34° 49' 25.3803"	20240521	삼동면 동천리 산182-19	표철	남해군청		
15	13651	도근점	중부	248035.029	295912.204	128° 02' 54.1992"	34° 49' 25.2408"	20240521	삼동면 동천리 산182-1	표철	남해군청		
16	18322	도근점	중부	257504.545	283769.978	127° 54' 59.86172"	34° 54' 36.34846"	20240524	설천면 문항리 산33-5	표철	남해군청		
17	18323	도근점	중부	257537.565	283739.676	127° 54' 58.68010"	34° 54' 37.42882"	20240524	설천면 문항리 1153-7	표철	남해군청		
18	18324	도근점	중부	257571.455	283749.293	127° 54' 59.07112"	34° 54' 38.52556"	20240524	설천면 문항리 1153-11	표철	남해군청		
19	19652	도근점	중부	251083.918	293465.155	128° 01' 19.14258"	34° 51' 4.98257"	20240528	창선면 부윤리 661-24	표철	남해군청		
20	19653	도근점	중부	250923.933	293479.485	128° 01' 19.64241"	34° 50' 59.78707"	20240528	창선면 부윤리 산54-8	표철	남해군청		
21	19654	도근점	중부	251257.514	293536.713	128° 01' 22.02868"	34° 51' 10.59129"	20240528	창선면 부윤리 661-24	표철	남해군청		
22	10485	도근점	중부	248540.468	281030.138	127° 53' 8.8248"	34° 49' 46.2952"	20240528	남해읍 광천리 734-1	표철	남해군청		
23	11566	도근점	중부	242641.885	289400.617	127° 58' 35.93426"	34° 46' 32.38691"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24	11567	도근점	중부	242658.196	289366.291	127° 58' 34.59069"	34° 46' 32.92699"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25	11568	도근점	중부	242638.799	289354.263	127° 58' 34.11031"	34° 46' 32.30141"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26	11569	도근점	중부	242673.069	289335.062	127° 58' 33.36836"	34° 46' 33.4194"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27	11570	도근점	중부	242690.577	289366.737	127° 58' 34.62063"	34° 46' 33.9775"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지척기준점 측량성과(도근점) 고시내역

연번	기준점명칭	점명	원점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연번
28	11571	도근점	중부	242708.639	289361.664	127° 58' 34.42802"	34° 46' 34.56512"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29	11572	도근점	중부	242692.752	289395.623	127° 58' 35.75732"	34° 46' 34.03893"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0	11573	도근점	중부	242689.525	289300.029	127° 58' 31.99706"	34° 46' 33.96437"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1	11574	도근점	중부	242665.888	289295.427	127° 58' 31.80705"	34° 46' 33.19891"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2	11575	도근점	중부	242698.727	289265.662	127° 58' 30.64914"	34° 46' 34.27377"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3	11576	도근점	중부	242635.332	289278.881	127° 58' 31.14475"	34° 46' 32.21267"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4	11577	도근점	중부	242698.545	289185.332	127° 58' 27.49026"	34° 46' 34.29317"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5	11578	도근점	중부	242668.611	289183.275	127° 58' 27.39796"	34° 46' 33.32257"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6	11579	도근점	중부	242637.451	289181.826	127° 58' 27.32908"	34° 46' 32.31201"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7	11580	도근점	중부	242640.885	289148.752	127° 58' 26.02983"	34° 46' 32.43382"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8	11581	도근점	중부	242675.056	289143.632	127° 58' 25.84154"	34° 46' 33.54415"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39	11582	도근점	중부	242675.590	289113.033	127° 58' 24.63849"	34° 46' 33.57111"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0	11583	도근점	중부	242698.560	289152.629	127° 58' 26.2043"	34° 46' 34.30394"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1	11584	도근점	중부	242733.604	289187.741	127° 58' 27.59836"	34° 46' 35.42994"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2	11585	도근점	중부	242747.654	289125.341	127° 58' 25.14994"	34° 46' 35.90543"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3	11586	도근점	중부	242774.909	289167.111	127° 58' 26.80289"	34° 46' 36.77663"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4	11587	도근점	중부	242775.591	289212.439	127° 58' 28.58561"	34° 46' 36.78448"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5	11588	도근점	중부	242785.137	289244.488	127° 58' 29.84949"	34° 46' 37.08413"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6	11589	도근점	중부	242782.093	289351.946	127° 58' 34.07394"	34° 46' 36.95151"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7	11590	도근점	중부	242762.816	289377.391	127° 58' 35.06717"	34° 46' 36.31802"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8	11591	도근점	중부	242739.148	289410.227	127° 58' 36.34933"	34° 46' 35.53972"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49	11592	도근점	중부	242716.462	289430.777	127° 58' 37.14875"	34° 46' 34.79717"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50	11593	도근점	중부	242686.308	289462.121	127° 58' 38.36976"	34° 46' 33.80888"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51	11594	도근점	중부	242663.450	289431.906	127° 58' 37.17286"	34° 46' 33.07675"	20240516	이동면 신전리 32-7	와서못	남해군청		

남해군 고시 제2024 - 71호

2024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고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및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에 따라 2024년 남해군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해 수 욕 장 명	개 장 기 간	개장일수	개 장 시 간
상 주 은 모 래 비 치	2024. 7. 5. ~ 8. 18.	45	10:00 ~ 18:00
송 정 술 바 람 해 변	2024. 7. 12. ~ 8. 25.	45	10:00 ~ 18:00
설 리 해 수 욕 장	2024. 7. 12. ~ 8. 25.	45	10:00 ~ 18:00
두 곡 · 월 포 해 수 욕 장	2024. 7. 12. ~ 8. 25.	45	10:00 ~ 18:00
사 촌 해 수 욕 장	2024. 7. 12. ~ 8. 25.	45	10:00 ~ 18:00

※ 상주은모래비치 : 8. 1. ~ 8. 15. 19:00~21:00 야간 개장 병행

2.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 다음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또는 시설물 설치
- 남해군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 7)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폭죽, 불꽃놀이 등)
- 8) 해수욕장 내 주차장, 야영장, 쓰레기 집하시설, 도로, 교량이 아닌 곳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마를 집입시키는 행위
- 9) 허가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정하는 행위
- 10) 백사장의 보호를 위하여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 11)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끝.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923호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 화학사고 발생시의 군민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아. 교육·훈련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6월 25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환경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272, 팩스 055-860-37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환경과 환경지도팀(전화 055-860-32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해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해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제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 의료지원 계획
-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 3.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9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940호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마을어업 면허처분 및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남 해 군 수

○ 마을어업 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 종류	포획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마을 제317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창선당항	116,000	2024.06.11. ~ 2034.06.10.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당항 어촌계	제139호 재개발
남해마을 제318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식물	창선냉천	299,000	2024.06.11. ~ 2034.06.10.	남해군 창선면 냉천리	냉천 어촌계	제180호 재개발

※ '23/'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마을어업 면허 소멸사항

면허 번호	어업 의 종류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마을어업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면허기간	유효기간 연장	주소	성명	
남해 마을 제139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 식물	창선 당항	122,000	2004.06.11. ~ 2014.06.10.	2014.06.11. ~ 2024.06.10.	남해군면 창선면 당항리	당항계 어촌계	어업유효 면허 기간 만료
남해 마을 제180호	마을어업	정착성 수산동 식물	창선 냉천	299,000	2004.06.11. ~ 2014.06.10.	2014.06.11. ~ 2024.06.10.	남해군면 창선면 냉천리	냉천계 어촌계	어업유효 면허 기간 만료

남해군 공고 제2024 - 953호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1.

남 해 군 수

1. 최종합격자 (1명)

채용분야	성 명	응시번호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강 ○ ○	5

2. 합격자 등록 및 제출서류

- 등록기간 : 2024. 6. 17. (월) ~ 2024. 6. 19. (수)
- 등록처 :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팀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등록원서(붙임1)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과에서 배부)

3. 합격자 임용사항

-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자 및 본인 포기 등으로 합격취소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됩니다.
- 기타사항 문의는 행정과 행정팀(☎055-860-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954호

공무직근로자(농기계수리)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공무직근로자(농기계수리)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1.

남 해 군 수

1. 최종합격자 (1명)

채용분야	성 명	응시번호
공무직근로자(농기계수리)	정 ○ ○	3

2. 합격자 등록 및 제출서류

가. 등록기간 : 2024. 6. 17.(월) ~ 2024. 6. 19.(수)

나. 등 록 처 :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행정팀

다.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등록원서(붙임1)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행정과에서 배부)

3. 합격자 임용사항

가.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결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부적격자 및 본인 포기 등으로 합격취소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다.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됩니다.

라. 기타사항 문의는 행정과 행정팀(☎055-860-3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960호

남해대교 유지관리 용역 정성적 평가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남해대교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심사위원

천주현	안광열	김세열	박재현	손호영	허홍수	정광복	유명선
-----	-----	-----	-----	-----	-----	-----	-----

□ 심사점수

평가 부문*		A 위원	
		(주) 유신	
정성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4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8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6
		GNSS시스템 운영	4
		기타시스템 운영	2
	사업관리 능력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5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4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3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2.4
	합계		68.4

평가 부문*			B 위원
			(주) 유신
정석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5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8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6
		GNSS시스템 운영	4
		기타시스템 운영	2
	사업관리 능력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4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4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2.4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2.4
	합계		

평가 부문*			C 위원
			(주) 유신
정석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4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8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4.8
		GNSS시스템 운영	4
		기타시스템 운영	1.6
	사업관리 능력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5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4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3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합계		

평가 부문*			D 위원	
			(주) 유신	
정석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4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8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4.8	
		GNSS시스템 운영	3.2	
	사업관리 능력	기타시스템 운영	2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5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3.2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2.4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합계			65.6

평가 부문*			E 위원	
			(주) 유신	
정석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5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6.4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6	
		GNSS시스템 운영	3.2	
	사업관리 능력	기타시스템 운영	2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5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3.2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3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합계			66.8

평가 부문*			F 위원
			(주) 유신
정석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5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6.4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6
		GNSS시스템 운영	4
		기타시스템 운영	1.6
	사업관리 능력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4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4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3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2.4
합계			66.4

평가 부문*			G 위원
			(주) 유신
정석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4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6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8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4.8
		GNSS시스템 운영	4
		기타시스템 운영	1.6
	사업관리 능력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5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3.2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3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합계			66.2

		평가 부문*	H 위원
			(주) 유신
정석적 평가 (70)	과업의 이해 및 계획	과업의 추진배경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5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운영전략	15
		제안요구사항 적용 여부	5
	과업 수행내용 및 방법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8
		계측시스템 운영	8
		지진시스템 운영	6
		GNSS시스템 운영	4
		기타시스템 운영	2
	사업관리 능력	사업추진 조직 구성 및 기술능력의 적정성	5
		과업 공정별 단계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4
		운영지원계획의 적정성	3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합계		

※ 평가결과와 심사위원명단의 순서는 무관합니다.(순서 무작위)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964호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중복도) 의견수렴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남 해 군 수

1. 용역명 :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기 간 : 2024. 6. 12. ~ 2024. 6. 19.
3.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메일 제출
 - 팩 스 : 055-860-3727
 - 전자메일 : chidoheo@korea.kr
4. 의견처리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에 반영

남해군 공고 제2024-967호

남해군 제3기 공공건축가 모집 공고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남해군 지역 내 또는 인근지역에서 건축·도시·조경·디자인 관련 공공사업에 대한 기획 참여 및 검토·자문·심의, 설계공모심사 등을 담당할 「남해군 제3기 공공건축가」를 모집 하오니, 경험이 풍부하고 참신한 전문가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6. 13.

남 해 군 수

1. 모집개요

가. 모 집 명 : 남해군 제3기 공공건축가

나. 모집인원 : 7명 내외

※ 응모신청 결과에 따라 공공건축가 선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모집분야 : 건축 계획·설계, 도시, 조경, 경관분야 등

라. 거주지역 : 경상남도 또는 부산

마.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바. 주요업무 : 남해군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및 설계공모 심사 등

- ① 남해군 공공건축 기획·설계·시공·운영 등에 대한 조정·자문
- ② 주요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기획 연구
- ③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심사
- ④ 기타 남해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건축 관련사업에 대한 자문

2. 응모자격

가. 응모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②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 ③ 대학에서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나. 우대사항

- ① 정비계획의 수립 및 단지설계, 총괄계획가(MP, MA)로 참여 실적이 있는 자
- ② 공공기관 발주사업 자문 및 준공실적 우수 참여 시상·실적이 있는 자
- ③ 건축관련 수상실적이 있는 자
- ④ 국제 현상공모 당선 실적이 있는 자
- ⑤ 여성기업으로 등록한 여성건축사

3. 응모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024. 06. 13. ~ 2024. 06. 24.

나.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응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한 후 서명(인) 하여 제출

- 학력, 자격증, 수상실적, 재직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공공건축가 선정 이후 제출

※ 제출된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증빙 불가 시 선정 무효됨을 유의

다. 제출방식 : 우편, 방문접수, 전자메일 접수

* 방문접수 : 2024. 06. 24.(월) 18:00까지 제출되는 신청서까지 인정

* 우편접수 : 2024. 06. 24.(월) 우편 소인 날인분에 한정

* 전자메일 : mindo6022@korea.kr

* 문의처 : 건설교통과 공사관리팀 (☎055-860-3245)

* 주 소

: 우편번호 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공사관리팀 공공건축가제도 담당자

4.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남해군 공공건축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건축가 선정은 응모자 중에서 적정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공건축가 선정 결과는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선정된 공공건축가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공사관리팀 055-860-3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4- 970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추가구성(안 제6조)

나. 삭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제22조)

다. 신설

-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피해장애인보호·지원(안 제23조~제24조)

- 협력체계구축, 교육·홍보(안 제25조~제26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남해군수(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 1)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우52419)
- 2) 전 화 : 055-860-3842, 팩스 : 055-860-3891
- 3) 전자우편(이메일) : wkd68570@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장애인지원팀 (전화 055-860-3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를 “법 제58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부서장”을 “부서장·국장”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장애인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 대행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25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장애인 정책 업무 부서장

2. (생 략)

④ (생 략)

제2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① 군

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애인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부서장 ·
국장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장애인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

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의4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이 대행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p><신 설></p> <p><신 설></p> <p>제23조 (생 략)</p>	<p>마련</p> <p>2. <u>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u></p> <p>3. <u>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u></p> <p>제25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u>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26조(교육·홍보) 군수는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제23조에 따른 <u>점검 인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27조 (현행 제23조와 같음)</p>
---	--

남해군 공고 제2024 - 991호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업무여유도) 의견수렴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에 따라 참여 대행자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여유도 평가자료를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남 해 군 수

- 1. 용역명 : 남해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2. 기 간 : 2024. 6. 18. ~ 2024. 6. 25.
- 3.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전자메일 제출
 - 팩 스 : 055-860-3727
 - 전자메일 : chidoheo@korea.kr
- 4. 의견처리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에 반영

남해군 공고 제2024 - 996호

군계획시설(도로, 농어촌도로 창선면207호선) 공사완료 공고

남해군 공고 제2021-59호(2021. 1. 14.)로 군계획시설로서 최초 결정되고 실시계획 인가된 남해군 군계획시설(도로, 농어촌도로 창선면207호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 6. 20.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

○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353 ~ 오용리 1243-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농어촌도로 창선면207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면적)

○ 규 모 : 도로개설(B=6.5m, L=1,897m, A=19,077m²)

4. 사업시행자

○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건설교통과)

5. 사업기간

○ 2021. 3. 10. ~ 2024. 3. 27.

6. 관계도서 열람 및 그밖에 자세한 사항

○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313) 또는 도시건축과(055-860-3415)로 문의

남해군 공고 제2024-1009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민대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민대상 조례」

2. 개정이유

남해군민대상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의 수상자 자격과 추천자격을 강화하고 수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관장 및 시상(안 제1조 ~ 제2조)

나. 수상자 자격, 추천자격(안 제3조 ~ 제4조)

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5조 ~ 제6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 제8조)

마. 수상자 결정, 공개와 보안(안 제9조 ~ 제10조)

바. 대리수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안 제11조 ~ 제12조)

사. 군민상 취소(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7월 1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1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055-860-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4. 6. .

제 출 자 : 행 정 과 장

1. 의결주문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남해군민대상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의 수상자 자격과 추천자격을 강화하고 수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관장 및 시상(안 제1조 ~ 제2조)
- 수상자 자격, 추천자격(안 제3조 ~ 제4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5조 ~ 제6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7조 ~ 제8조)
- 수상자 결정, 공개와 보안(안 제9조 ~ 제10조)
- 대리수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안 제11조 ~ 제12조)
- 군민상 취소(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완료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2024. 06. 20. ~ 07. 11.(21일) / 의견제출 없음
- 2)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붙임 참고)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참고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법제처 검토 중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민대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민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남해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및 시상) ① 남해군민상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 남해군민상은 2년마다 1명을 선정하여 군수가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상은 「남해군민의 날 조례」에 따른 군민의 날 행사 시에 상패로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도로 정하는 날에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수상자 자격 등) ① 남해군민상 수상자(이하“수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남해군민상 추천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군 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사람
-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

- 3.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공·사생활과 사회활동에 따른 품행 등이 바르지 않아 주변이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

제4조(추천자격) ① 남해군민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군수 및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2.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다만, 수상후보자가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
- 3.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의 해당 읍·면장
- 4. 재외 향우회 대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군민 또는 향우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정한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적조서 1부.
 - 2. 이력서 1부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4. 공적 증명서류 및 범죄경력 증빙서류
 - 5. 연서명부 1부. 제2항에 따른 추천의 경우에 한한다.

제5조(남해군민상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1. 수상후보자 모집 방법과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심사대상자 선정과 심사위원회에의 회부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민상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위원
 - 가. 남해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 나. 남해군민으로서 지식과 교양·덕망을 겸비한 사람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해군민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⑤ 운영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표 추천인의 의견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남해군민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1.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방법과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2. 수상자 선정 심의
-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9조(수상자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수상자후보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자는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선정심의를 거쳐 시상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제10조(공개와 보안 등) ① 수상후보자는 공고에 따라 모집하고 모집 결과는 공개한다.

②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심사대상자 및 수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와 그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의 이름을 제외한 채점 또는 적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보안에 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11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수상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공식행사 초청
2. 수상자 본인 사망 시 조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3조(군민상 취소) 군수는 군민상을 수상한 사람의 공적과 이력, 범죄사실 등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군민상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남해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남해군민대상 조례에 의하여 남해군민대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